

# 저작권과 AI

박경신

kyungsinpark@korea.ac.kr

불법복제 DVD를 사서  
보는 것은 불법이다

# 저작권의 목적

- 창작자 보상? 창작물의 향유? **문화예술의 창달**
- 올바른 타협점: 창작물을 향유하는 통로를 물리적으로 확대하는  
지점
- 저작권의 원어 - Copy-Right.
- Copy: 1권의 책을 2권으로 만들면?
- “통로의 물리적 확대” → 2사람 이상이 향유할 수 있음. 복제, 공연, 방송, 공중송신(방송, 웹캐스팅, 업로딩), 배포(불법복제물의 경우만. 합법복제물은 소진이론 적용)
- 저작물의 향유(읽고 보기) 자체는? 향유가 자유롭지 않다면 누가 저작물을 살까?

# AI의 저작권 문제

1. Training을 위한 복제의 문제 – Sara Silverman소송
2. Training : 저작물을 검색엔진은 이미 읽고 보고 있었다.
3.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침해
- (4. AI가 또는 AI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가? – 쉬운 문제)

# 가장 논쟁적인 문제: Training

News Media Alliance: “영리적인 소비”에 대한 보상으로 “전기료와 연료비”처럼 내야 한다?”

저작권법 상 “소비”는 저작물의 향유. 저작권법 상 돈을 낼 필요가 없음.

“소비”에 대한 대가의 예: 극장입장료. 영화를 보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므로 돈을 낼 필요가 없으나 극장에서 보는 편리함에 대해 내는 것임. 책을 살 때 돈을 내는 것도 책이라는 물리적인 물건을 사는 것이지 저작권을 사는 것이 아님.

NMA가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? **기출고된 기사? 앞으로 출고될 기사?** 아직 출고도 되지 않은 기사에 대해 기존 저작물과 동일/유사하다면 저작권침해로 봐야 함. 기출고된 기사에 대해서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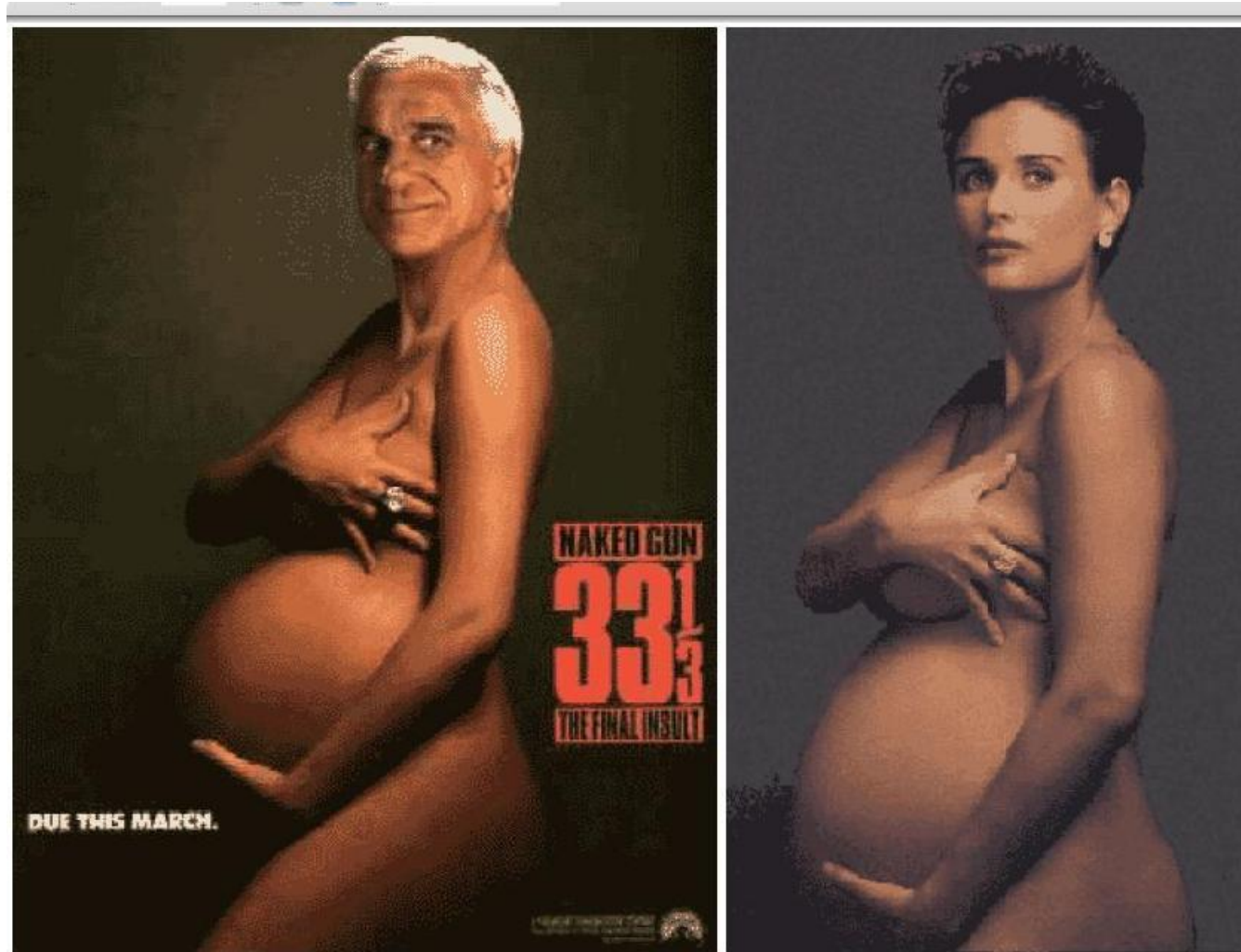
**과연 AI의 이용을 막아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? 예) AI기반의 검색**

현재 AI의 이용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? 저작권손배소를 제기한다면 누가 돈을 내야 할까? **ChatGPT 3.0을 무료로 이용하여 번역서비스 제공 후 돈을 버는 번역가?**

# 결과물에 있어서 공정이용.

- 현행법: (1)비영리적인 목적 (2) 원작의 이용량 (3) 시장가치의 훼손 (4) 원작의 창작성
- 시장가치: 뉴욕타임즈 논리의 동어반복 (저작권라이선스가 아님. 페이지를 풀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임). 참고: Grimes의 목소리 라이선스도 저작권라이선스가 아님.
- 새로운 창작을 위해 “필요한 만큼”의 원작의 이용
- 새로운 창작?
- 필요한 만큼?

# 공정이용



출처: 박경신, <사진으로 보는 저작권, 초상권, 상표권 기타등등>, 97쪽

# 결과물 유사성

- 공정이용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귀결: “새로운 창작이 없다면 공정이용이 아니다”
- 쏫점의 이전: 기출고 기사를 읽고 보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? → 앞으로 나올 기사가 공정이용/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가
- 같은 붓질, 같은 구도 → 저작권침해 가능성
- 렘브란트 조명법: 렘브란트 시대에도 저작권침해가 아니었을까?



# 정보공유

- 정보의 개방성 = 정보의 비경쟁성
- 마르지 않는 우물
- 인터넷의 개방성 - 오픈넷의 존재목적
- 정보기술과 비정보기술의 차이 - 디지털인권단체들

# 저작권과 기술진보

- 세탁기 때문에 망하는 세탁소의 문제
- 공장 때문에 망하는 공예방의 문제
- 복사기 때문에 망하는 화방의 문제
- 자율주행기술 때문에 망하는 택시회사들의 문제
- 언론 기사를 써내는 AI때문에 언론사가 겪은 어려움 v. ?

# 해법

- 저작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금, e.g. 사적복제보상금 (복제?습득?)
- 저작권이 원래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가?
- 거래비용의 문제 e.g. 공인인증서의 문제
- 정보의 습득에 대한 세금의 문제
  
- 저작인격권의 문제. ChatGPT의 표절 문제. 아이디어의 원천에 대한 인정.
- 오픈넷 : “창작자고유보상권” 운동 → 언론인고유보상권 운동의 가능성?